##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6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 박성훈·고동진·우재준

박충권 · 김종양 · 서지영

안상훈 • 백종헌 • 곽규택

김대식 · 조배숙 · 임이자

의원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방재사각지대에 방치된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기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증하며 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금속화재에 관한 규정 미비로 화재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

실제로 소방청이 국내 배터리 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화재 안전 조사를 시행한 결과 88개 업체(21.3%)에서 총 119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배터리 관련 공장 5곳 중 1곳이 위험물 취급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배터리 공장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법률 제 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배터리(전지를 포함한다)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의 안전관리) 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			
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			
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			
를 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4. 배터리(전지를 포함한다)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u>14.</u> (생 략)	<u>15.</u>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